



보도일시 (인터넷) 2026. 09. 02.(수) 12:00
(지면) 2026. 09. 03.(목) 조간

배포 2026. 09. 02.(수) 07:00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지표」 개정고시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어업분야 강제노동 보호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9월 3일(목)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수사·점검 등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객관적인 지표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협업하여, 작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어업분야 특화지표개발)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고립된 근무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특징이다.

제3자의 계좌로 급여 강제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비용 미지급 등 경제적 속박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가족에게 채무이행 요구, 승선 전 구금, 선내 연락기기 이용 차별 등 물리적·정서적 통제행위를 세부지표로 신설했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를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착취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지표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만들었다”라며,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분야가 특화되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 및 인권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 1부.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책임자	과 장	박정식	(02-2100-6441)
		담당자	사무관	김대선	(02-2100-6457)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51-773-5740)
		담당자	사무관	장순길	(051-773-5743)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구본찬	(051-773-5722)
		담당자	사무관	이성재	(051-773-6111)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32호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라목 중 ““행위”를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위’”로 하고, 같은 목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신매매방지법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호 나목 □ 경제적 통제수단 중 두 번째 ○란의 “이탈보증금에”를 “이탈보증금, 담보 제공 등에”로 하고, 같은 ○란의 두 번째 -란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채무의 예시)” 중 “선급금 등”을 “선급금, 고금리의 대부 계약서의 작성, 연대보증 등”으로 한다.

- 급여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일정 금액이 중개업자, 고용주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이체 또는 송금되거나 현금 지급하도록 강요받았다.

같은 호 나목 □ 경제적 통제수단 중 세 번째 ○란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 생필품을 구함에 있어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받거나 이를 임금에서 직접 공제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수령에 제한을 받았다.
- (어업)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 시 귀국에 필요한 법정 최소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같은 호 나목 □ 물리적 통제수단 중 두 번째 ○란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어업) 어업분야의 단순 노무인 줄 알고 취업을 하였으나, 원거리 조업선에 태워지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같은 호 나목 □ 물리적 통제수단 중 다섯 번째 ○란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부상이 확인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치되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내국인 선원보다 비싸게 식비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 물량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같은 호 나목 □ 물리적 통제수단 중 일곱 번째 ○란 중 "휴대전화 등"을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란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연락기기 사용을 제한받거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체계 이용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선원과 달리 불리하게 제한되는 처우를 받았다.

같은 호 나목 □ 물리적 통제수단 중 여덟 번째 ○란 다음에 ○란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근로자가 고용주나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개별적인 만남을 통제하는 등 외부 지원 기관(노동청, 경찰, 상담 센터 등)에 스스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브로커(중개인)가 정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류를 독점적으로 처리하였다.
- (어업) 한국 입국 후 승선전(귀국 전 하선 후)에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곳에 구금이 되었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항구 정박 시 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육상 상륙을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 (어업) 정상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무처 변경 동의서에 반대하여 사업장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같은 호 나목 □ 정서적 통제수단 중 첫 번째 ○란 중 "협박으로"를 "협박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여"로 하고, 두 번째 ○란 중 "국내에서 내쫓거나"를 "국내 또는 사업장에서 내쫓기거나"로 하며, 여섯 번째 ○란 중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를 "주소 및 위치, 조업·항해계획 등을 전혀"로 한다.

같은 호 나목 □ 정서적 통제수단 중 여섯 번째 ○란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수나 장비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되었거나, 이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였다.
- 외부 기관과의 접촉에 대비하여 사전에 각색된 문답을 강요하거나 해당 접촉과정을 감시하였다.

○ 근무조건(임금, 숙소,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계약 연장 거부,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 추방 시킬 수 있다고 믿게하여 부당한 처우를 강요당했다.

○ (어업) 선원이 하선할 경우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승선이 불가하게 할 것이라 지속적으로 고지를 받았다.

○ 근무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했다.

제2호 다목 공통 요소의 첫 번째 □란 중 "급여·퇴직급여를 공제당하거나"를 "급여·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유보 당하거나"로 하고, 같은 목 노동력 착취 요소의 네 번째 □란 중 "숙식제공 등"을 "숙식제공, 위생보건시설 등"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를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별이나 불리한 제한을 받았다."로 하며, 같은 요소의 다섯 번째 □란 중 "강요당했고,"를 "강요당했거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제2조 관련)

1. 일반 적용기준

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신속·정확한 발견과 조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일반화된 지표로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공무원 등은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등의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아래 지표의 행위, 수단, 목적의 해당 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잠재적피해자”라 한다)의 국적·성별·연령·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지표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법 제2조제1호 후단의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래 지표 중 수단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잠재적피해자가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위’, ‘수단’, ‘목적’의 각 항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인신매매방지법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가. 인신매매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

항 목	요 소
☐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 집
☐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운 송
☐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 닉
☐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 계 인 수

나.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 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 계 (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위 ‘수단’ 요소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통제수단

-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급여·퇴직급여를 자신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이탈보증금, 담보 제공 등에 의한 속박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급여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일정 금액이 중개업자, 고용주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이체 또는 송금되거나 현금 지급하도록 강요받았다.

※ (채무의 예시)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급금, 고금리의 대부 계약서의 작성, 연대보증 등

- 노동의 대가로 급여·퇴직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 생필품을 구함에 있어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받거나 이를 임금에서 직접 공제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수령에 제한을 받았다.
- (어업)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 시 귀국에 필요한 법정 최소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 물리적 통제수단

- 고용주, 기획사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어업) 어업분야의 단순 노무인 줄 알고 취업을 하였으나, 원거리 조업선에 태워지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 숙소에서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부상이 확인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치되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내국인 선원보다 비싸게 식비 등 비용을 지불하거

나 지금 물량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연락기기 사용을 제한받거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체계 이용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선원과 달리 불리하게 제한되는 처우를 받았다.
-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근로자가 고용주나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개별적인 만남을 통제하는 등 외부 지원 기관(노동청, 경찰, 상담 센터 등)에 스스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브로커(중개인)가 정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류를 독점적으로 처리하였다.
- (어업) 한국 입국 후 승선전(귀국 전 하선 후)에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곳에 구금이 되었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항구 정박 시 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육상 상륙을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 (어업) 정상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무처 변경 동의서에 반대하여 사업장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 정서적 통제수단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여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국내 또는 사업장에서 내쫓기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채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

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조업·향해계획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수나 장비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되었거나, 이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였다.
- 외부 기관과의 접촉에 대비하여 사전에 각색된 문답을 강요하거나 해당 접촉과정을 감시하였다.
- 근무조건(임금, 숙소,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계절 근로자 송출 중단, 계약 연장 거부,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 추방 시킬 수 있다고 믿게하여 부당한 처우를 강요당했다.
- (어업) 선원이 하선할 경우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승선이 불가하게 할 것이라 지속적으로 고지를 받았다.
- 근무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했다.

다.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 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급여·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유보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았다.	
☐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위생·보건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별이나 불리한 제한을 받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왔다.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거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일반 적용기준 라. 잠재적피해자가 ‘행위’, ‘수단’, ‘목적’의 각 항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잠재적피해자가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범죄를 행하였거나, ‘행위’, ‘수단’, ‘목적’의 각 항목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u>인신매매방지법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② <u>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2. 피해자식별지표의 세부 점검항목 나.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통제수단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u>이탈보증금에 의한 숙박으로</u>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 － 채무 변제를 이유로 급여·퇴직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하였다. － <추가> ※ (채무의 예시)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급금 등	나. <좌동> □ <좌동>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 또는 <u>이탈보증금 담보제공 등에 의한 숙박으로</u>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겪었다. － <좌동> － <좌동> － 급여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일정 금액이 중개업자, 고용주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 이체 또는 송금되거나 현금 지급하도록 강요받았다. ※ (채무의 예시) 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사업장 내 벌금, 생활비 명목 선급금, 고금리의 대부 계약서의 작성, 연대보증 등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물리적 통제수단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신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신 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 생필품을 구함에 있어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받거나 이를 임금에서 직접 공제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수령에 제한을 받았다.

○ (어업)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 시 귀국에 필요한 법정 최소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 <좌동>

○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 (어업) 어업분야의 단순 노무인 줄 알고 취업을 하였으나 원거리 조업선에 태워지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었다.

○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 부상이 확인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치되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내국인 선원보다 싸게 숙박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 물량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 (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연락기기 사용을 제한받거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체계 이용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선원과 달리 불리하게 제한되는 처우를 받았다.

○ 근로자가 고용주나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개별적인 만남을 통제하는 등 외부 지원 기관(노동청, 경찰, 상담 센터 등)에 스스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신 설>	○ <u>브로커(중개인)가 정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류를 독점적으로 처리하였다.</u>
○ <신 설>	○ <u>(어업) 한국 입국 후 승선전(귀국 전 하선 후)에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곳에 구금이 되었다.</u>
○ <신 설>	○ <u>(어업) 특별한 사유없이 항구 정박 시 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육상 상륙을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u>
○ <신 설>	○ <u>(어업) 정상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무처 변경 동의서에 반대하여 사업장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u>
□ 정서적 통제수단	□ <좌동>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u>협박으로</u>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본인 또는 가족이나 <u>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u> 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여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 국내에서 <u>내쫓거나</u>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국내 또는 사업장에서 <u>내쫓기거나</u>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u>전혀</u>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u>조업항해계획</u> 등을 <u>전혀</u> 알지 못하고, 고용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 <신 설>	○ <u>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수나 장비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되었거나, 이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였다.</u>
○ <신 설>	○ 외부 기관과의 접촉에 대비하여 사전에 <u>각색된 문답을 강요하거나 해당 접촉과정을 감시하였다.</u>
○ <신 설>	○ <u>근무조건(임금, 숙소,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계약 연장 거부,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 추방 시킬 수 있다</u> 고 믿게하여 부당한 처우를 강요당했다.
○ <신 설>	○ <u>(어업) 선원이 하선할 경우 지역 선주 모임을 통</u>

○ <신 설> 다. <u>인신매매등의 착취</u>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요 소</th></tr> <tr> <td>□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u>급여·퇴직급여를 공제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u></td><td>공통</td></tr> </table>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요 소</th></tr> <tr> <td>□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u>숙식제공 등</u>)이 지속적으로 <u>보장되지 않았다.</u></td><td>노동력 착취</td></tr> </table>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요 소</th></tr> <tr> <td>□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u>강요당했고</u>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td><td>노동력 착취</td></tr> </table>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u>급여·퇴직급여를 공제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u>	공통	항 목	요 소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u>숙식제공 등</u>)이 지속적으로 <u>보장되지 않았다.</u>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u>강요당했고</u>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노동력 착취	<u>해 해당 지역에서 승선이 불가하게 할 것이라 지속적으로 고지를 받았다.</u> ○ <u>근무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했다.</u> 다. <좌동>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요 소</th></tr> <tr> <td>□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u>급여·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유보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u></td><td>공통</td></tr> </table>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요 소</th></tr> <tr> <td>□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u>숙식제공, 위생보건시설 등</u>)이 지속적으로 <u>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별이나 불리한 제한을 받았다.</u></td><td>노동력 착취</td></tr> </table> <table border="1"> <tr> <th>항 목</th><th>요 소</th></tr> <tr> <td>□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u>강요당했거나</u>,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td><td>노동력 착취</td></tr> </table>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u>급여·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유보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u>	공통	항 목	요 소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u>숙식제공, 위생보건시설 등</u>)이 지속적으로 <u>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별이나 불리한 제한을 받았다.</u>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u>강요당했거나</u> ,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u>급여·퇴직급여를 공제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u>	공통																								
항 목	요 소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u>숙식제공 등</u>)이 지속적으로 <u>보장되지 않았다.</u>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u>강요당했고</u>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 고용 또는 이주과정(모집·이동·입국 후 등)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채무(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숙박비용, 중개수수료 등) 또는 이탈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구실로 <u>급여·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유보 당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u>	공통																								
항 목	요 소																								
□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u>숙식제공, 위생보건시설 등</u>)이 지속적으로 <u>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별이나 불리한 제한을 받았다.</u>	노동력 착취																								
항 목	요 소																								
□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u>강요당했거나</u> ,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노동력 착취																								